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61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18.

발 의 자 : 문진석 · 박정현 · 손명수
이정문 · 강준현 · 최혁진
홍기원 · 김교홍 · 맹성규
이재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기관장이 금품비위, 성범죄, 채용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경우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음.

그런데 최근 공공발주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공공기관이 지배·관리·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·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3조의4 신설 등).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0호 중 “단서 및 제52조의3제3항”을 “단서, 제52조의3제3항 및 제53조의4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6항 중 “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”을 “제8항, 제52조의3제3항 및 제53조의4제2항”으로 한다.

제34조제1항제2호 중 “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”을 “제8항, 제52조의3제3항 및 제53조의4제2항”으로 한다.

제5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3조의4(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감사 등) ①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지배·관리·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·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임명된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감사 등에 대한 적용례)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)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8조(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9. (생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제35조제2항,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등	10. ----- ----단서, 제52조의3제3항 및 제53조의4제2항----- -----
11. ~ 17. (생략)	11. ~ 17. (현행과 같음)
제25조(공기업 임원의 임면) ① ~ ⑤ (생략)	제25조(공기업 임원의 임면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, 제35조제3항, 제48조제4항·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.	⑥ -----제8항, 제52조의3제3항 및 제53조의4제2항----- ----- -----.

⑦ (생 략) 제34조(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1. (생 략) 2. 제22조제1항, 제31조제7항, 제35조제2항·제3항, 제36조제2항, 제48조제4항·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·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⑦ (현행과 같음) 제34조(결격사유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제8항, 제52조의3제3항 및 제53조의4 제2항----- ----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제53조의4(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감사 등) ①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지배·관리·운영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공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 ②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해 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
---	---

임을 건의 ·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을 거쳐 임명된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을 거쳐야 한다.